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9

제출년월일 : '97. .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산간계곡수의 보호관리에 따른 지도, 계몽등을 행할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관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명예감시원의 의무(안 제7조)

- ①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
- ② 계곡수의 상태, 환경변화 및 계곡수의 오염상황 발견시 시장에게 신고
- ③ 계곡수의 오염행위등에 대한 단속활동
- ④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계몽활동 등

3. 근거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항
-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붙 임 : ①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② 기타참고자료(근거법령등)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도, 계몽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산과 산 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 (이하 "명예감시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 지도·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 (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정수 및 위촉) ①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등의 부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제7조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
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된 때 시장에게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등에 대한 단속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 등

제8조 (교육훈련) 시장은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계몽 단속요령등과 환경관련 기본교육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 한다.

제9조 (활동비 지원)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명예감시원으로 부터 적발내용을 신고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등의 처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예감시원증표 발급 및 회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곡수명예감시원 증명 발급대장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계곡수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 발췌

○ 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① 소하천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다.
-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배출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